

법률 제 17527 호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6제1항 중 “산업재산권 및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(이하 “영업비밀”이라 한다)”을 “산업재산권”으로 한다.

제40조의5제2항 후단 중 “영업비밀”을 “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(이하 “영업비밀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